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305
----------	------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0월 20일 신동원 의원(찬성 28명)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신동원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는 그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 및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해 왔음.
- 그러나 현행 조례상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수행하고, 참여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와 같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해당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 되어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참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8조, 제9조제2항)
- 나. 그 밖의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비대상
- 다. 기타
 - (1) 입법예고 ('25. 10. 28. ~ 11. 01.)
 -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I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에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스마트 위치와 손목닥터 9988 앱을 활용한 ‘서울형 헬스케어(이하 : 손목닥터 9988)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그간 행정조례 제9조를 근거로, 손목닥터9988 사업 참여자(18세 이상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대학(원)생)들에게 사업 참여실적 등에 따라 연 최대 10만 포인트(=10만 원)를 지원해 왔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 그런데 행정조례 제9조제3항에는 비용의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동 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게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조례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①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도 추가를 하거나 ② 아니면 대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회의록(2025년 3월 5일(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병도 위원: 손목닥터9988, 이 신체활동에 관련된 사업만 대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폭넓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플러스 우리 서울시 직장인까지. 이게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례가 시민 플러스 서울시내 소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고 돼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시민건강국: 서울거주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 이병도 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 조례를 보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시민이 아니라 조례에 서울 소재 시민 플러스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 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없는 대학생이나 자영업자까지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조례 체계랑도 맞지 않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시민건강국: 일단 대학생이 빠져 있고요……. ○ 시민건강국: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고려를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거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원 위원: 학생을 포함하시든지 아니면 학생을 빼든지 이런 거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뺀다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는 문제가 없고, 대학생을 넣는다고 그러면 조례에 그 부분이 없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 시민건강국: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신동원 위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

-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손목닥터9988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례상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 ----- ----- ----- ----- ----- ----- <u>.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비용의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u>참여실적, 횟수, 기여도</u>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참여실적, 횟수, 기여도 등(이하 “참여실적 등”이라 한다)</u> --. <u>.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에게도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④ (생 략)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조례상 명시된 대상자(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외에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다수 의견¹⁾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 개정(입법)을 통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밖에 개정안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는 제3조에서 이미 서울특별시를 “시”라 약칭하였기에 약칭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제11조(수당)는 누가(“시장은”) 누구에게(“전문가에게”)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다음 페이지 참조).

1) 자료1: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회의록(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 이병도 위원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에 왜 서울시민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자꾸만 문구를 넣어서까지도, 그걸 왜 넣는 거냐 하면 그것들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원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지 않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에 그 문구를 넣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법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 도문열 위원 : 우리가 어떤 법령을 만들어 놓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법령과 조례에 준해서, 법령과 조례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 조례는 이런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불일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조례를 사업 운영에 맞게 고쳐야 되겠다 지금 말씀이죠?
- 시민건강국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 도문열 위원 :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 시민건강국 : 처음부터 조례를 완벽하게 해 놓고 대상을 했으면 좋은데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을 늘리려는 취지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하다가 이게 입법상 조례 규정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 해서 사후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조례보다 더 꼭넓게 적용을 해 왔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문열 위원 : 이게 제안사유에 보면 조례와 실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지 실제로는 조례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료2: 2025. 8. 13. 법률자문(제목: 손목닥터9988 사업 추진 시 조례상 근거 없는 서울시민 외 지원 가부 검토) 의견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더라도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를 참여대상으로 정한 조례에 위반하여 ‘주민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생’을 참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조례 위반 사실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권 침해 주장, 시민단체나 언론에 의한 문제 제기 등에 의하여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서울 소재 대학생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u>서울시</u>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시</u> -----.
제11조(수당 등) <u>신체활동장려사업</u>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u>전문가는</u>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u>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u> ----- <u>전문가에게</u> -----.

2. 종합 의견

-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손목닥터 9988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례상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 조례상 명시된 대상자(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외에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 개정(입법)을 통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의안번호
3305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신동원 의원	2025. 10. 20.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는 그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해왔으나 현행 조례상 근거 규정이 누락 되어 있음○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참여 대상자로서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와 실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 보호 필요 <p>〈주요 입법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소재 대학(원)생을 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및 안 제9조 제2항 후단 신설)			
추진 경과	○ 2025. 10. 20. 조례 개정안 제안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input checked="" type="radio"/>) / 수정가결 (<input type="radio"/>) / 부결(<input type="radio"/>) / 보류(<input type="radio"/>)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목닥터9988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 직장이나 학교를 두고 주된 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인·자영업자·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타당한 접근이며,○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대응 방안					
상 임 위 처리 결과					
향후 계획					
담당부서	스마트건강과	팀장	박홍권(☎2133-7562)		
			담당		
			김진아(☎2133-9690)		

IV. 질의 및 답변요지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이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으니까 근본적으로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하는 것들의 목적이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겁니까? ○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올해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었잖아요. 잘못 편성되고 집행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 그럼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없는 건데 아무런 문제 없는 건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저는 어쨌든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어떤 취지의 사업이든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해도 과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되어야지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잘못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후행화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돼면 안 될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솔직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더욱 세심히 살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관련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에 대해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와 지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고요.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를 하면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2장 주민, 제16조를 보면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민은 서울에 주소를 갖지 않은 사람은 우리 서울시민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9988 신체활동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가 아니고 여기 지금 서울시민의 신체활동장려조례 이 조례를 근거로 하니까 명확하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서울시민 외에 직장인 또는 자영업, 대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떤 일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납세자인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주소 거소를 둔 사람 시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체류하는 사람 까지도 인권조례에서는 시민으로 보고 기본적 권리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조례하고 해석상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입법정책적으로 해소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것고요.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p>례를 개정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게 가능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1324억 포인트 예요. 이게 포인트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마치 카지노에 가서 취업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이게 돈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1324억 포인트가 이때까지 누적된 포인트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1324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대상을 적어도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주소를 가진 자, 서울시민 명확하게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어떤 그런 미등록인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애매한 또는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늘려가겠다는 애기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그전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할 때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거고요. 맞죠? 여기 자료 보면 6페이지에 25년 8월 13일 법률자문에 보면 서울소재 대학생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 제9조제3항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정이 오늘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습니다.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p>이 발의하신 조례죠? 그럼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여러 우려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까지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지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옛말에도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는 게 다 살기 좋은 환경에 가라고 그런 옛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에 대한 주소지만 서울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서울 아이가 아니겠죠. 하지만 서울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서울이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 사람인 겁니다. 맞죠? 그럼 지방 아이들이 와서 아프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습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비교를 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건 아닙니다. 사실 공공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998을 이번에 슈퍼앱으로 하면서 예방적인 의료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거든요. 공공의료 같은 경우 사후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방 거주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전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건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잠깐 기억이 나는 게 사실 우리 시립병원들이 원가 이하로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병원에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비율이 제 기억에 한 20% 내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경제와 예산 부분만 따지게 된다고 하면 다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p>○ 이런 점들은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 1324억 포인트를 존경하는 도문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포인트로 나가서 거기에 따른 건강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건강을 얻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는 손실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아낄 수 있는 비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 9988이 저도 어떤 날은 귀찮아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가서 100원이라도 벌어봐야겠지.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3 수험생에게까지도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에 지쳐서 있지만 버스 타고 엄마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닐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면은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p>	<p>른 지역 주민들한테 공적인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정책 방향이랄지 타 지방과의 관계랄지 이런 것 보면 항상 좀 너그럽게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p> <p>○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p>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p>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p>	
장석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도문역 의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고 또 이 성배 의원님 말씀도 다 동감이 가는데 한 가지 조금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지방에 주소를 둔 학생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 손목 닥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졸업하고 나서 만약 이 지역에서 생활을 안 하고 지방으로 또 내려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생각해본 거 있습니까? ○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해야 그러니까 이게 혈세가 아까 천억이 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 진짜 여기서 학교도 안 다니고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전에 가입한 거 가지고 지방에서 막 맹기면서 포인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는 시스템을 시급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민의 혈세가 근거도 없이 나가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그래서 처음에 가입 할 때만 인증했던 것을 어떤 주기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증하는 중간인증하는 주소지를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단 10원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이렇게 의원님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게 된 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조례적인 제도적인 부분도 완비된 상태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소지를 사후적으로라도 인증할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수 있는 1년 단위에 한번씩 인증하든지 이렇게 한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일시적으로 여기에 머무는 대학생만을 견줄 일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가입을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을 어느 날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인증을 받게 할 건지 안 그러면 본인이 가입한 1년째 되는 날, 2년째 되는 날 이렇게 인증을 할지 그건 기술적으로 어떤 게 시스템에 부하를 덜 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의원이 이걸 개정하게 됐는데요. 328회 임시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대학생까지 하는 근거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학생을 빼든지 늘려면 근거를 만들든지 누구보다도 저는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나왔어요. 그렇죠? 지나왔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 9988을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보급을 해서 앱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가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그랬을 때 너는 지방 대학생이니까 안 되고 우리는 서울이니까 돼. 이러지는 못했을 거고 지금 뒤늦게 임시회 때 이거를 발견해서 본 의원도 질의를 하게 됐는데 328회 임시회때부터 333회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시장 발의도 했다가 의원 발의도 했다가 이렇게 되면서 오탈자가 나면 다시 보류했다가 다시 하고 이러는 과정에 지금 횟수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p>를 거듭하면서 오늘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개정하게 됐어요. 지금이라도 마련을 해야죠. 계속 그냥 두기는 어렵잖아요.</p>	
오금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를 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서로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사업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적합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 데서는 법과 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9988이 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GPS를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서울을 많이 벗어나 있는지 어쩐지는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따른 학생이 추가되려고 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250만 명을 넘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봤는데 거기에서 보자 그러면 5%가 안 되네요? 아주 적은 비율입니다. 실제로 비용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250만 명의 가입자 중에서 5%가 안 되는 약 1만 명 정도 학생들을 더 넣자고 또는 지금 1,324억 포인트 중에서 3억4천6백 포인트. 말하자면 우리가 9988 사업을 하면서 지금 애러가 난 겁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시민의 건강정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조례를 보면요. 제9조제3항의 비용과 관련해서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21년부터 25년 까지 11,759명 되겠습니다. ○ 지금 이분들이 적립한 포인트는 액수로 따지면 3억4천6백 정도 됩니다. 21년부터 토탈리해서요.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p>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고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의 구역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하는 주민의 또는 서울시민의 그런 개념을 좀 벗어나서 직장인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도 들어가고 학생들, 대학생들도 직업이 되고 하자를 치유하려다 보니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사업을 지방자치법 또는 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명확하게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다가 자영업도하고 대학생도 하고 또는 서울시의 미등록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있어요. 약 44만 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집행부서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 에러를 치유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있고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9월, 7월에 우리 서울시에서 변경협의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대학원생 포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결과 보완 요청이 온 게 보면 사유가 1. 구체적 직업기준 및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타지역 주민의 경우 자격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 그리고 3. 타지역 유사사업 수혜자에 대한 중복직업관리계획 등을 보완해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하게 서울시 ○ 계속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p>민과 타지역 주민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그냥 구분을 하지 않고 타지역 주민에게까지 지금 물론 이 부분도 그래요.</p> <p>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지금 9988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250만인데 목표치가 얼마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이것도 사실은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포인트 괄호 열고 닫고 원하고 이게 화폐 단위를 표현을 해줘야지. 그냥 포인트만 하니까 이게 화폐인지 결국 여기 보면 2026년에 이건 예산 관련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게 저희가 조례를 다루는데 국장님께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대학생들에게 해주자 해주지 말자. 이런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보편적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도 그렇고 생명권, 건강권 그런 것들과 포인트 지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일시해서 논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쨌든 예산 항목으로 봐도 아마 기타 보상금 항목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 1,300억 이상의 예산의 대부분이 포인트 현금성 지급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예산의 차원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고.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환수도 안 돼요. 지방 보증 같은 경우는 잘못 집행됐을 때 환수를 할 수 있지만 기타 현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행정사무감사하는 날 왔습니다. 11월 13일입니다.

의원명	주요 질의 사항	답변
	<p>이 나갔잖아요. 심지어 다 써버렸어. 그것들은 환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을 가지고 대학생에게 주자 말자라고 논의를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p> <p>아까 조례를 근거로 대시는 게 인권조례도 되셨는데. 인권과 예산의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들,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일 시해놓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p> <p>정확한 논의 내용들은. 이게 지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회 대상이잖아요. 사회보장협의회 계속 했었고. 마지막 사회보장협의회 결과 나온 게 언제였죠? 저희가 행정감사 중이었잖아요. 그게 며칠이었죠?</p> <p>그러니까 오늘 제가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핵심은. 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개정되기 전에. 그리고 사회 보장협의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는 거지. 그 논의를 마치 기타 보상금인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권리처럼 얘기하거나. 우리가 뭔가 대학생에게 지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로 자꾸 왜곡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p>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생략」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305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신동원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상욱,
이성배,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는 그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 및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해 왔음.
- 그러나 현행 조례상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수행하고, 참여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와 같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해당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 되어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참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8조, 제9조제2항)

나. 그 밖의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참여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참여실적, 횟수, 기여도 등(이하 “참여실적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에게도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전문가는”을 “전문가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u>서울시</u>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시</u> -----.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 ----- ----- ----- -----. <u>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u>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비용의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u>참여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제9조(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참여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이하 “참여실적 등”이라 한다)</u> -----

--.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에게도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④ (생 략)

제11조(수당 등)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 ----- 전문가에게 -----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추진사업1)의 근거를 마련 하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의결과 향후 기편성예산 외 늘어나는 추가 재정소요(현재로서는 별다른 확대계획 없음)는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3
e-mail : sme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시민건강국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 30,374,143천원